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동안 산세무서를, 인천지방국세청에 계양세무서를, 부산지방국세청에 부산강 서세무서 등을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4급 3명, 5급 17명)을 증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등을 위하여 국세청에 2024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득자료관리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의 정원 3명(4급 또는 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3명)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인천지방국세청 소속 일부 세무서의 명칭을 관할 구역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4. ~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전산정보관리관”을 “정보화관리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 업무 총괄

제7조의 제목 “(전산정보관리관)”을 “(정보화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산정보관리관”을 각각 “정보화관리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종교인 소득 관련 세원관리 및 제도 개선

제1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3. 내국세 범칙조사(「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8조 및 제10조 위반행위와 관련된 조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 관리 및 평가
제19조제1호 중 “주조”를 “주류제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조기술 및 양조시설”을 “주류제조 기술 및 주류제조 시설”로 한다.

제39조제2항 후단 중 “200명”을 “210명”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한시정원”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8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소득자료관리단) ① 국세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득자료관리단을 둔다.

② 소득자료관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2.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분석 및 관리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④ 소득자료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소득자료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 중부지방국세청의 소속세무서란 중 “수원, 동수원”을 “동안산, 수원, 동수원”으로 하고, 같은 표 인천지방국세청의 소속세무서란 중 “북인천, 서인천, 남인천”을 “부평, 계양, 서인천, 남동”으로 하며, 같은 표

부산지방국세청의 소속세무서란 중 “북부산”을 “북부산, 부산강서”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0,567”을 “20,587”로 하고, 일반직 계 “20,567”을 “20,5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543”을 “20,563”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3월 31일”을 “2023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전산정보관리관”을 “정보화관리관”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1일까지는 20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4의2]

국세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1조의2제4항 관련)

소득자료관리단(존속기한: 2024년 2월 21일)

총계	12
일반직 계	12
3급 또는 4급 이하	1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하부조직) ①·② (생략)	제4조(하부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u>전산정보관리관</u> ·감사관·납세자보호관 및 국제조세관리관 각 1인을 둔다.	③ ----- <u>정보화관리관</u> ----- ----- ---
제6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6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②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9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 업무 총괄
10.·11. (생략)	10.·11. (현행과 같음)
제7조(<u>전산정보관리관</u>) ① <u>전산정보관리관</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u>정보화관리관</u>) ① <u>정보화관리관</u> ----- -----.
② <u>전산정보관리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② <u>정보화관리관</u>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 (생략)	제8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제조세관리관은 다음 사항	② -----

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 4. (생략) 5. <u>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u> 6. <u>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탈세정보의 수집·처리</u> 7. ~ 10. (생략) 제13조(법인납세국) ① (생략)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7.·8. (생략) 제14조(조사국) ① (생략)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u>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계획의 종합·분석 및 평가</u> 4. <u>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심리·조사 및 처분</u>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7. ~ 10. (현행과 같음) 제13조(법인납세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u>종교인 소득 관련 세원관리 및 제도 개선</u> 7.·8. (현행과 같음) 제14조(조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u>내국세 범칙조사(「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8조 및 제10조 위반행위와 관련된 조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 관리 및 평가</u> <삭제>
---	--

5. ~ 10. (생략)	5. ~ 10. (현행과 같음)
<u>11. 원단위 및 생산수율조사</u>	<u><삭 제></u>
12. ~ 18. (생략)	12. ~ 18. (현행과 같음)
제19조(직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직무) ----- ----- --.
1. <u>주조</u> 에 관한 원료의 연구·분석 및 감정	1. <u>주류제조</u> ----- -----
2. <u>주조기술 및 양조시설</u> 의 개선에 관한 연구·분석	2. <u>주류제조 기술 및 주류제조 시설</u>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200명</u> 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② ----- ----- ----- --. ----- ----- ----- <u>210명</u> ----- ----- ----- ----- ----- ----- ----- -----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8장 한시정원

<신 설>

-----.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1조의2(소득자료관리단) ① 국
세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
항제1호에 따라 2024년 2월 21
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득자료관리단을 둔다.

② 소득자료관리단에 단장 1명
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
로 보한다.

③ 소득자료관리단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2.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분
석 및 관리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④ 소득자료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소득자료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국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0,567</u>	<u>20,587</u>	+20
일반직 계	<u>20,567</u>	<u>20,587</u>	+20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0,543</u>	<u>20,563</u>	+20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3